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「서울청년센터영등포」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0. 3. 31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2월 21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3월 25일

라. 상정일자: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3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)

가. 제안이유

-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 「서울청년센터영등포」를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상시설: 서울청년센터영등포(신길로 204 2층, 규모 347㎡)
- 이용대상: 서울시 청년(19세 ~ 39세)
- 위탁사무: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시설 관리·운영 일체
 -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, 지역청년 역량강화, 청년커뮤니티 지원, 시설유지관리

- 위탁기간: 2020년 7월 ~ 2022년 6월(2년)
- 운영방법: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운영
- 운영인력: 총 6명(시설장1, 직원 5)
- 소요예산(2020년 기준, 6개월): 금288,600천원(시비)

구 분		예 산 액 (단위:천원)	세 부 내 역	비고
민 간 위탁금	계	288,600		
	인건비	102,000	인건비, 4대 보험료 등	
	사업비	137,000	청년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	
	운영비	49,600	공공요금, 시설관리비 등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서울청년센터영등포의 운영을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민간위탁체 선정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「서울청년센터영등포」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19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민간위탁 목적

-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 「서울청년센터영등포」 를 조성함에 따라 신규 운영하는 서울청년센터-영등포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함

2. 민간위탁 내용

- 시설명 : 서울청년센터영등포
- 소재지 : 영등포구 신길로 204
- 시설규모 : 347㎡
- 위탁기간 : 2020년 7월 ~ 2022년 6월 (2년)
- 운영방법 :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운영
- 운영인력 : 시설장1 직원 5
- 주요사업
 -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, 지역정보 집적 및 정보제공, 지역청년 역량강화, 청년 커뮤니티 지원, 시설유지관리
- 이용대상 : 서울시 청년(19세 ~ 39세)

3. 민간위탁 추진 일정 (위탁기한 포함)

- 2020년 2월 : 「서울청년센터영등포」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
- 2020년 4월 : 「서울청년센터영등포」 리모델링 공사
- 2020년 4월 :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선정심사
- 2020년 6월 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
- 2020년 7월 : 「서울청년센터영등포」 운영시작

4. 민간위탁 소요 예산안

○ 2020년 소요예산 : 금288,600천원(시비)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산액	세부내역	비고
민간 위탁금	계	288,600		
	인건비	102,000	인건비, 4대 보험료 등	
	사업비	137,000	청년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	
	운영비	49,600	공공요금, 시설관리비 등	

5. 민간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청년공간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, 시설위탁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, 효율성 제고
-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실행에 있어 일관성 있는 사업 구상 및 실행이 가능
- 체계적인 지역 청년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사회자원의 활용과 연결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모색하고 청년과 공공의 영역을 확장

6. 법적근거

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- 「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22조(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)